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정희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019 - 35

발의연월일: 2019. 5. .

발 의 자: 정정희, 이충현, 송영섭
김현희, 김선경, 송순효
김용원, 박주선, 김성한
경기문, 황영호, 윤유선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무료셔틀버스의 확대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약칭을 제1조에서 제3조로 변경

나.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무료셔틀버스의 확대 운영 (버스1대→2대, 노선정비)에 따른 위탁운영 근거조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9. 6. 3. ~ 6 . 10.): 의견 없음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붙임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를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법”을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인복지법」 ----------.
제3조(정의)(생 략) 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생 략)	제3조(정의)(현행과 같음)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 2. (생 략)
제17조(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① 구청장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제17조(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